

# 교육훈련 위탁계약서

\_\_\_\_\_ (이하 '갑')과 (주) \_\_\_\_\_ 원캠퍼스원격평생교육원 \_\_\_\_\_ (이하 '을')은 '갑'이 '을'에게 위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## 제1조 (계약범위 및 내용)

가. 계약내용

훈련과정	훈련기간	교육인원	전체 훈련비	자기부담금	정부지원금	비고
						명부첨부
						"
						"
						"
						"

## 제2조 (계약금액 및 지급)

- 가. 총 계약금액은 '전체 훈련비'로 하며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구분한다.
- 나. '갑'은 자기부담금을 '을'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, '을'은 '갑'의 훈련위탁 교육 종료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·수령한다.
- 다. 가항의 자기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훈련실시 후 미 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, 정부지원금 중 미 수료자 분으로 환급받지 못한 비용은 자기부담금으로 간주하여 '갑'이 '을'에게 추가로 납부한다.
- 라. '갑'은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'을'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

## 제3조 (훈련진행에 관한 사항)

'갑'은 '을'이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'을'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

## 제4조 (수료)

- 가. '을'은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.
- 나. 제2조 '나'항의 교육비를 입금하지 아니하면 '갑'은 수료증을 받을 수 없다.

## 제5조 (성실의무)

- 가. '갑'과 '을'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나. '갑'은 훈련생의 변동사항(휴직, 퇴직, 전보) 발생 즉시 '을'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다. '을'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인정신청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 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. '을'의 귀책사유로 인정·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'갑'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'을'이 책임을 진다.
- 라. '갑'이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'갑'의 책임으로 하고, '갑'의 사정으로 훈련이 취소되는 경우 교육비 반환은 '을'의 사업주 위탁훈련 교육비 반환기준에 따른다.

## 제6조 (개인정보 수집 및 보호에 관한 사항)

- 가. '갑'은 훈련생의 개인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 번호 등)를 계약과 동시에 '을'에게 일괄 제공

